

창원지방법원 2023. 7. 7 선고 2022가단11649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---

## 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4. 4. 4 선고 2023나12626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3. 7. 7 선고 2022가단116491 판결

## 전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

피 고 1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요한

2. D조합

변론종결 2023. 6. 16.

판결선고 2023. 7. 7.

## 주문

1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D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### 1. 주위적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 C은 김해시 E 전 8,046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0. 3. 25. 접수 제90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F 임야 11,107㎡(이하 ‘이 사건 임야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통틀어 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D조합은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. 6. 20. 접수 제539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고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# 2. 예비적 청구취지

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에 관하여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망 G는 망 H과 사이에 장남인 망 I, 차남인 피고 C, 삼남 J 등을 두었는데, 1965. 8. 11. 사망하여 망 I이 호주상속을 하였다.

나. 망 I은 1970. 6. 12. 김해시 K 임야 1정 9단 4무보(이하 ‘분할 전 임야’라고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, 분할 전 임야는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다.

다. 망 I은 1972. 7. 27. 원고 A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들로 원고 B를 두었고 1974. 11. 19. 사망하였다.

라.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에 관하여 1980. 3. 25.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2006. 6. 20. 피고 D조합(이하 '피고 조합'이라 한다)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주장 및 판단

### 가. 원고들의 주장

#### 1) 주위적 청구

망 I이 사망하여 원고들은 분할 전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 C은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따라서 원고들에게, 피고 C은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 피고 조합은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# 2) 예비적 청구

설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 하더라도, 피고 C은 원고 B가 성년이 되면 반환할 생각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,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임야를 반환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하였다.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에 관하여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나. 판단

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

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규도